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58호 2016. 9. 28.(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29호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330호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10
거창군 조례 제2331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5
거창군 조례 제2332호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22
거창군 조례 제2333호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25
거창군 조례 제2334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37
거창군 조례 제2335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예 규

거창군 예규 제2호 거창군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운영 지침	48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89호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토지세목 고시 5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943호 거창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58

거창군 공고 제2016-946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입법예고 64

회 망									
--------	--	--	--	--	--	--	--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9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29호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조 제목 및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중 “관수자”를 “보관자”로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무관리규정</u>」 제41조에 따라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공고 및 보관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인영의 내용 및 색깔) ① 공인의 인영은 <u>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u>,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p> <p>② ~ ④ (생략)</p> <p>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u>관수자</u>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u>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u>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공인 <u>관수자</u>) 공인의 종류별 <u>관수자</u>는 별표 2와 같다.</p> <p>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u>관수자</u>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날인은 공인 <u>관수자</u>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찍는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40조-----</p> <p>제5조(인영의 내용 및 색깔) ① --- <u>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u>보관자</u>----- ----- -----<u>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u>-----</p> <p>제13조(공인 <u>보관자</u>) -----<u>보관자</u>-----</p> <p>제14조(공인의 보관) ----- ----- -----<u>보관자</u>-----</p> <p>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u>보관자</u>-----</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 <u>관수자</u>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u>별지 제7호서식</u>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16조(규칙)</u>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경우</u>-----<u>보관자</u>----- ----- -----<u>경우</u>----- -----</p> <p>③----- -----<u>별지 제5호서식</u>----- ----- -----</p> <p><u>제16조(준용)</u>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u>제17조(규칙)</u>----- -----</p>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공인의 구분	크 기
1. 군수 직인	<u>3.0</u> 정사각형
2.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보조기관 포함) 가. <u>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u> 나. <u>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u>	<u>2.4</u> 정사각형 <u>2.1</u> 정사각형
3.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직인 (하부조직의 장 포함)	<u>1.8</u> 정사각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재무관</u>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u>부채관리관</u> 지출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나. 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	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5. 합의제기관의 공인 가. 합의제기관의 청인 나.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	<u>3.6</u> 정사각형 <u>3.0</u> 정사각형

[별표 2]

공인의 보관자(제13조 관련)

공인의 구분	<u>보관자</u>
군수 직인	공인업무담당의 장
전자이미지 공인	공인업무담당의 장
민원전용 군수 공인	민원업무담당의 장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소관업무담당의 장
보조기관의 직인	소관업무담당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소관업무담당의 장
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	소관업무담당의 장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51
----------	-----------

제출연월일	2016. 8. 2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수 직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의 모양,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종류별 규격 변경(안 제4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인의 종류별 규격을 별표와 같이 변경

나. 공인의 인영 사항을 변경(안 제5조)

-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여 인영 선택의 폭을 넓히고
-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추가함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조, 제40조, 별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6. 20. ~ 7. 10.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6년 9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30호

거창군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없는 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신청서

① 건축주	(연락처:)	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건축물명		④ 건축물 용도	
⑤ 건축물 소재지			
인 증 내 역	⑥ 인증구분(지정일)	본인증 (20 년 월 일)	예비인증 (20 년 월 일)
	⑦ 인증기관		
	⑧ 인증 유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⑨ 지원 신청액	금	원정	
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p>「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 취득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수귀하</p>			
구비서류 : 인증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			

거창군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증수수료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비 지원: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임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목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6 ~ 46
----------	-----------

발의일자	2016. 08. 23.
발 의 자	강철우의원외4명

1. 제안이유

○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와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2조, 안 제5조)
- 다.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인증기준의 관련 법령을 명시함(안 제4조)
- 마. 인증 사후관리 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 바. 인증확산 및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의2,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2017년 7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복지정책과,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8. 26 ~ 9. 0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9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31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4조의2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12조로, 제18조·제19조를 제13조·제14조로, 제21조·제22조를 제15조·제16조로 한다.

제11조(중전 제14조의2)제2항 중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를 “임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p>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p> <p>2.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p>	<p>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u>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u>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④ (생략)</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거창군 <u>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u>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제14조의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8조(위탁운영기간) ----- ----- -----<후단 삭제></p>
<p>제9조(수탁자의 의무)</p> <p>① ~ ③ (생략)</p> <p>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9조(수탁자의 의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④ (현행 제6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 권의 허용 4. 재산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p><삭 제></p>
<p>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보육 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삭제 2012.11.28)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p><삭 제></p>
<p>제12조(임면) (생략)</p>	<p>제10조(임면) (현행 제12조와 같음)</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장 : 60세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 57세 <p>②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의2(원장의 임기) ① (생략)</u> <u>②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u></p>	<p><u>제11조(원장의 임기) ① (생략)</u> <u>② 임기</u>----- ----- -----<u>사람</u>----- -----<u>사람</u>----- -----</p>
<p><u>제15조(전보) (생략)</u></p>	<p><u>제12조(전보) (현행 제15조와 같음)</u></p>
<p><u>제18조 ~ 제19조 (생략)</u></p>	<p><u>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8조제19조와 같음)</u></p>
<p><u>제21조 ~ 제22조 (생략)</u></p>	<p><u>제15조 ~ 제16조 (현행 제21조제22조와 같음)</u></p>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51
----------	-----------

제출연월일	2016. 8. 2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2016년 보육사업 안내」),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

(현행)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2세 이하 저학년 보육

(변경)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 「영유아보육법」 제27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함(안 제14조)

(현행) 원장은 60세,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57세

(변경) 연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 2007추134 : 법령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 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

다.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개정함(안 제9조 ~ 제11조)

○ 수탁자 의무 중 일부, 수탁자의 행위의 금지, 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함

※ 상위법령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대법원판례 2007추134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7. 18. ~ 8. 08.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미반영)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이승진 등 33명	안 제14조 근무상한 연령 삭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년에 맞추어 60세로 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 교직원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하는 규정이 없음 - 대법원판례(2007추13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장과 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제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권리 제한으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어 무효 - 따라서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함 	의견 미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9월28일

거창군 조례 제2332호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6 ~ 49
----------	-----------

제출연월일	2016. 8. 2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5.10.21.시행)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상위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 독립된 별도의 자체적인 목적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령을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위임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함.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위임된 영업장소와 신고서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공연·전시·도서시설 등의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역행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8. 01. ~ 8.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운영·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9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33호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하 “생태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32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 시설의 역할
4. 생태교육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생태교육장 게시판 및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생태교육장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생태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설 사용 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자는 예약 즉시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의 긴급 개선·보수를 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시물 등의 기증)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시물 등의 취득 및 구입, 기탁 등에 관하여는 「거창박물관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입장료(관람료)					
	어 른		청 소 년·군 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전 시 관 (통합입장료)	2,000	1,000	1,000	500	500	200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 소 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린 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 						

[별표 2]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제6조제2항 관련)

무 료 입 장 대 상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1급 ~ 3급 장애인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군수와 사전협의를 완료된 경우

[별표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1층 (32.81제곱미터)	1일	성수기	70,000원	4인 기준
			비수기	50,000원	
	2층 (30.82제곱미터)	1일	성수기	70,000원	4인 기준
			비수기	50,000원	
교육 세미나실	3층 (81.55제곱미터)	4시간	50,000원		방송·영상장비 냉·난방, 의자비치
		8시간	100,000원		
		1일	150,000원		

※ 초과 사용료 부담기준

1. 숙박시설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 나. 1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전액
- 다.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

2. 교육세미나실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 나. 1시간 초과 시: 사용료 전액

※ 이용시간

- 가.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 나. 전시관 3층(교육세미나실): 그날 10: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별표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반환사유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 반환기준은 18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서식]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시설명

[] 게스트하우스, [] 교육세미나실,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료 감면사유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운영·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손해배상금 등
- 관련조문: 제6조, 제8조, 제1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55.6	500	500	500	500	2,055.6
	소계(a)		55.6	500	500	500	500	2,055.6
세입	국세							
	지방세		-	50	70	90	100	310
	소계(b)		-	50	70	90	100	310
총 비용 (a-b)			55.6	450	430	410	400	1,745.6

3. 관련 의견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6년 하반기(10월 ~ 12월) 운영비: 55,573천원
 - 인 건 비: 22,840천원
 - 일반운영비: 32,433천원
 - 기 타: 300천원

작성자: 산림과장 이 응 록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의안 번호	2016 ~ 51
----------	-----------

제출연월일	2016. 8. 2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구성: 14조문

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교육장 설치·운영

다.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고제면 빼재로 2325

라.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백두대간의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 발굴·보존·전시 등의 역할

마. 개관 및 휴관, 관람 시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날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바. 입장료,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별표1·2)

- 무료입장: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공무수행자, 거창군민, 국민 등

사. 시설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별표 3)

아. 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사용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별표 4)

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차.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카.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하여는 「거창박물관조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2016년도 예산 55,573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6. 13. ~ 7. 0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6년 9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34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를 우선 고용하고,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권장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노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p> <p>⑥ <u>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를 우선 고용하고,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u></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 -----</p> <p>② <u>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u></p>
<p>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u>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u></p>	<p><u><삭 제></u></p>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8조(구성) ① ----- ----- ----- -----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 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3조(시행규칙)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권장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노력 <p>제14조(시행규칙) (현행 제13조와 같음)</p>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51
----------	-----------

제출연월일	2016. 8. 2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사용 규정 신설함(안 제3조제6항, 제4조제2항)

-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사용 노력,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 근로자 등을 배제하지 아니함.

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제6조의2)

다. 재검토행 규제일몰제 도입(안 제13조)

- 경쟁제한적 차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규제 재검토행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6. 15. ~ 7. 05.

(나) 예고결과: 반영함(제3조제6항, 제4조제2항)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제8조제1항)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산림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는 군에서 생산된 우수 건설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견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함(안 제3조6항, 제4조2항)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9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35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내외”를 “이내”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기계관리담당”을 “농기계담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앞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임대료의 반환) <u>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 1. ~ 3. (생략)</p>	<p>제12조(임대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u> 1. ~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u> 1. ~ 4. (생략) ② <u>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14조(책임 및 변상) ① ~ ③ (생략) ④ <u>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u></p>	<p>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u>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④ <u>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관리 담당으로 한다.</u> 제23조(준용) <u>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및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u></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u>이내</u>----- -----<u>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농기계담당</u>----- <삭 제></p>
<p>제24조(시행규칙) (생략)</p>	<p>제23조(시행규칙) (현행 제24조와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 차 자				
거창군수	성명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주소				
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		수량	대		
부속작업기		수량	대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금	원(\)			
농기계 운 반	위 탁 운 반				
	출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입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계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작업면적	제곱미터 (일 평)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자: 거창군수 (인)

임차자: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54
----------	-----------

제출연월일	2016. 8. 2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법령체계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료 반환이 재량이 아닌 당연히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선함(안 제12조)
(현행) 반환할 수 있다.

(개정) 반환한다.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에 관한 특칙을 조례에 두는 것으로 삭제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성별균형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 제7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6. 24 ~ 7.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19조제1항)

거창군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6년 9월 28일

거창군 예규 제2호

거창군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군민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란 주민의견을 민주적
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군이 개최하는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되는 법적인 공청회는 제외한다.
3. “군정여론조사 패널”(이하 “여론조사 패널”이라 한다)이란 군민 및 관내
직장 종사자 또는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론조사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토론회 운영원칙) ① 토론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②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토론회는 참가자 상호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4조(토론회 관리체계)** ① 토론회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② 토론회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현안사항 추진 부서장(이하 “현안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토론 과제가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제출되거나 관련될 경우에는 총괄 부서장이 한다.
- ③ 현안 부서장은 토론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토론회 신청 및 승인)** ① 현안 부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총괄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 부서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토론회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토론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 부서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토론회 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현안 부서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패널의 기능) 여론조사 패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2.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의 여론 수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패널에게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여론조사 패널의 모집 및 위촉) ① 여론조사 패널은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② 여론조사 패널은 500명 이내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③ 신청자가 일부 지역과 성별, 연령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여론조사 패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여론조사 패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패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질서를 해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한 경우
2.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 헐박,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참여율이 저조하여 보편적인 참여활동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패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11조(여론조사 패널의 운영 등) ① 여론조사 패널의 운영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설문지 또는 그 밖의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여론조사 패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등) ① 토론회 참여자, 여론조사 패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활동지원) 토론회, 여론조사 패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토론회의 발표자토론자자료제출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조사 패널의 활동 횟수 및 군정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사용 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 운영
3. 그 밖에 군민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개최 승인 신청서

「거창군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개최를 승인 신청합니다.

행 사 명			
목 적			
일시 / 장소		참석인원	명
기 대 효 과			
주 요 내 용			
붙임 : 토론회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운영 지침

의안 번호	2016 ~ 47
----------	-----------

제출일자	2016. 9. 06.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 주요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군민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구성: 14조문

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군민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용의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현안사항,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군정여론조사 패널

라.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 관리체계: 총괄관리(기획감사실), 계획 수립·시행(현안 부서장)

○ 신청/승인

- 토론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제출, 5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
- 토론회 개최사항을 7일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고

○ 결과반영: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군수에게 결과 보고

마. 군정 여론조사 패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 모집 및 위촉: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500명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 임기: 2년

○ 온라인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설문지 등 효율적인 방법 활용

바. 그 밖의 활동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표창: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활동실적 우수자에게 수여

○ 활동지원 사항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마일리지 제도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5-158호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 착수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01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삼봉산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삼봉산권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사업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봉산리 일원
4. 소재지 규모 : 법정리 2개, 자연마을 11개
5. 면적 : 2,290ha (농림지역 : 1,152ha, 관리지역: 1,138ha)
6. 가구·인구 : 293호(농가:244호, 비농가:49호), 인구(649명)
7. 사업비 : 5,684백만원(국비 : 3,978백만원, 지방비:1,706백만원),
자부담 398백만원정도(사업비 확정후 정산)
8. 사업의 효과 : 삼봉산권역의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9.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년간)
10.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권역 다목적센터의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전 소득법인의 기금납입 협약 이행.
12. 주요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경·원기마을 도로정비, 다목적센터, 용초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구송마을 정자 건립
 - 소득증대사업 : 사과저온저장고 및 사과선별장 1식
 - 지역경관개선사업 : 원봉계마을 안길정비, 경관수목식재 및 산책로정비
 -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마을경영지원등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940-3542)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토지세목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5-158(2015.12.01)호로 고시된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 월 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2. 사업목적 : 삼봉산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삼봉산권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봉산리 일원
 - 나. 소재지 규모 : 법정리 2개, 자연마을 11개
 - 다. 면 적 : 2,290ha(농림지역:1,152ha, 관리지역:1,138ha)
 - 다. 사업개요
 - 지경마을 도로정비 : L=578m, B=4.0~6.0m
 - 원기마을 도로정비 : L=940m, B=3.5~4.5m
 - 다목적센터(신축) : 대지면적 4,234㎡, 건축면적 377.745㎡
연면적 522.265㎡
 - 용초마을회관 리모델링 : 1식
 - 구송마을 정자신축 : 육각정자 1개소
 -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 대지면적 3,320㎡,
건축면적 1,311.75㎡
 - 원봉계마을 안길정비 : L=121m
(안길정비 :L=81m, B=1.0m, 세천정비 : L=40m, B=3.0m)
 - 권역내 경관수목식재 및 산책로정비 : L=436.0m, B=3.0m
4. 소요사업비 : 5,684백만원
5. 사업기간 : 2012. 1. ~ 2016. 12.
6. 사업시행자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7.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거창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지역개발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문의전화 : 055-940-5546)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내역별첨

□ 수용·사용 할 토지 세목조서

순번	군	면	리	지 번		지 목	지 적(㎡)		공부상 소유자	
				본번	분할번		총지 적	편입 적	주 소	성 명
1	거창	고제	봉계	86		답	83	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2	거창	고제	봉계	87		답	1,084	1,0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3	거창	고제	봉계	89		답	2,314	2,3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4	거창	고제	봉계	85-1		답	2,471	2,4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5	거창	고제	봉계	90-3		도	120	12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6	거창	고제	봉계	1465-1		전	66	66		국농수산부
7	거창	고제	봉계	1465-2		전	272	272		국농수산부
8	거창	고제	봉계	90-2		답	24	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9	거창	고제	봉계	90-7		답	538	5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10	거창	고제	봉계	88		답	182	182	장기리	김호륜
11	거창	고제	봉계	659-2		답	4,063	4,06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최필수 외 1
12	거창	고제	봉계	664-2		답	3,012	3,012	거창군 고제면	진명섭
13	거창	고제	봉계	1216-1		전	3,034	3,034	경북 경산군 자인면	정상락
14	거창	고제	봉계	1211		전	3,261	3,26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한국농어촌공사
15	거창	고제	봉계	1187		전	3,534	3,534	거창군 고제면	육철수
16	거창	고제	봉계	산184-7		임	2,633	2,633	거창군 고제면	변영원 외 3
17	거창	고제	봉산	586-1		답	228	228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백형근
18	거창	고제	봉계	361-2		답	377	377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이용덕
19	거창	고제	봉계	362-4		전	1,375	1,375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경희
20	거창	고제	봉계	351		답	592	592	거창군 고제면	이용덕
계							29,263	29,263		

2016년 아이돌보미 특별 모집 안내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시행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거창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시간제 및 종일제), 0명

2. 지원자격

- 거주지 제한 : 거창군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활동 가능한 자
-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 ※ 보육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제한

3. 의무사항

- 양성교육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일정 : 2016. 10. 31.(월) ~ 11.11.(금) / 09:00 ~ 18:00
 - 교육장소 : 경남대학교
 - 교육비 : 200,000원 본인부담 (의무 활동 후 15만원 환급) - 최종 합격 후 납부
-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10시간 의무.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
 - ※ 특별 양성에 따른 안내
 - 의무 활동 완화 : 금회 양성자는 시간제 의무 활동 면제.
(종일제 수요가 없는 경우 의무 활동 없음)
 -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활동 시간이 적을 수 있음.

4. 근무조건

- 주요활동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 가사활동 제외
- 근무 장소: 이용자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 근무시간 : 이용자 가정의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 수당
 - 시간제 : 시간당 6,500원 (아동1명 평일 기준)
 - 종일제 : 월 200시간 1자녀 돌봄 기준 : 130만원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6. 9. 27.(화) ~ 29.(목)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처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종합복지관 1층

아이돌봄지원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첨부파일)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첨부파일)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검사포함 (면접합격자에 한함)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2016. 9. 30. 개별통지)
- 2차 면접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시: 2016. 10. 4.(화) 오후 2시
 - 장소: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1층 강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16. 10. 5.(수) - 개별통지

7. 기타사항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 합격자 중 건강진단서 상에 B형간염 등 전염성 질환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문 의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종합사회복지관 1층)
 ☎ 944-1365 / 팩스 945-1364

센터명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등록번호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기재란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칼라 사진 (3.5× 4.5cm)
연락처	(휴대폰)		(주택)			
거주주소			<input type="checkbox"/> 양육경험: 년 <input type="checkbox"/> 양육경험 없다			
활동수당 수령계좌	① 은행명 :		② 계좌번호 :		③ 예금주:(본인):	
취업취약 계층 유형 (중복체크가능)	①국민기초수급권자 ②차상위 계층 ③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④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⑤여성가장 ⑥고령자(만 55세 이상) ⑦장애인(등급:) ⑧북한이탈주민 ⑨결혼이주자 ⑩해당사항없음					
자격증 소지(해당자만)	보육교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 장애아관련 자격증() 초등학교 정교사 () 기타 ()					
아이돌봄 관련 활동경력 이력사항	기간	활동사항			기관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결격여부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정신질환자 ③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④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⑨아이돌보미 자격취소					
활동가능지역						
활동가능시간	<input type="checkbox"/> 정기적 < 요일 시 ~ 시 (총 시간) > <input type="checkbox"/> 언제든지					
활동희망장소	<input type="checkbox"/> ①이용자 가정 <input type="checkbox"/> ②돌보미 가정 <input type="checkbox"/> ③육아정보나눔터 <input type="checkbox"/> ④ 모두 가능					
활동참여경로	<input type="checkbox"/> 관련신문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주변권유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이돌보미에 대한 기타사항						
아이돌보미 지원동기(특기/강점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센터명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등록번호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기재란			

아이돌보미 이력서

사 진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생 년 월 일		
	현주소 (새길)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학 력 사 항						
년 월 일		내 용			비 고	
경 력 사 항						
년 월 일		내 용			비 고	
자 격 및 면 허 사 항						
취 득 일 자		자 격 및 면 허 이 름			비 고	

센터명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등록번호	
-----	--------------	--------	--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기재란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이름	접수번호
지원동기	
봉사활동 및 경력사항	
돌보미로서 계획 및 포부	

아이돌보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돌보미)

1. 수집·이용 목적

- 돌보미의 개인식별 및 활동에 따른 이력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 및 이력사항, 최종학력, 신분증번호
- 가족정보(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소득수준, 계좌번호
- 아이돌봄 활동이력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에서는 다음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거창군, 경상남도,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광역거점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서비스 인력관리, 실적관리 및 홍보, 돌보미교육, 관할 지역센터 지원 등

4. 보유·이용기간

- 문서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
-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리 : 준영구

5. 동의거부권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이름: (서명)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귀하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공포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9.1시행)됨에 따라
-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조문,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위원회 명칭 변경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내지 제3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상위 법령에서 정한 관련 조문 삭제(정비)
 - 위원회 기능(법 제25조), 구성(시행령 제74조), 위원의 해촉(시행령제 73조)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6. 9. 26 ~ 2016. 10. 12(17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73**, fax 940-3219 또는 거창군청홈페이지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공고/고시란(<http://www.geochang.g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 940-32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일자	2016.09. .
제 출 자	재 무 과 장

1. 제안이유

-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공포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9.1시행)됨에 따라
- 나.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조문,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나. 위원회 명칭 변경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다.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내지 제3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관련 조문 삭제(정비)
- 위원회 기능(법 제25조), 구성(시행령 제74조), 위원의 해촉(시행령제 7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여성아동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6. 9. 26 . ~ 10. 12.(17일간)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분석의뢰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다.

제3조(임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